

#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21대 총선 빈민·장애인 요구안

2020. 04. 03 빈곤사회연대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용하고 당선 이후 그들의 삶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해악이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는 논의조차 어려웠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부자들의 더 많은 이윤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음의 요구들을 강력히 제안한다.

## ①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② 퇴거가 아니라 상생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행정대집행법」 개정

## ③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공공임대주택 확충

## ④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예산확보

-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위한 예산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⑤ 권리 중심의 홈리스정책

- 「노숙인복지법」 개정
-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공공주도형 개발 적용

## ⑥ 민간에게 떠넘긴 의료, 사회서비스 중단하고 공공중심으로 보장

-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강화

#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21대 총선 빈민·장애인 요구안

## 1.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 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1999년 법 제정, 2000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이다. 빈곤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급여를 보장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20년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기본재산액, 과도한 소득환산률의 문제와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부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급신청자의 소득·재산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가는 것을 꺼리는 수급신청자는 극심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신청권 자체를 박탈당한다. 약간의 소득이나 주거용 재산, 자동차가 있는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노동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치료기록이 없거나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 수급권을 박탈당한다.
- 조사<sup>1)</sup>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상대빈곤율은 15.7%<sup>2)</sup>, 절대빈곤율은 11.1%<sup>3)</sup>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3%대에 불과하다. 2015년 7월 대규모 개편된 맞춤형개별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였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한 선정기준의 문제들은 그대로 두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 있다. 2020년 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이 상향조정되었으나 대도시 기준 6,900만원에 불과하다.
- 더불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단 한 번도 책정된 적이 없다. 2020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52만원에 불과하다. 전기·수도·가스·통신비를 비롯하여 식료품·생필품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장수준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19년 서울의 강서와 관악, 성북을 비롯하여 김포, 부산 등 전국각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마주하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낮은 기본재산액과 과도한 소득환산률, 근로능력평가와 조 건부수급 등 개선방안을 담아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 ②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조차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 87.5%, 91.5%, 87.2%인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각 37.9%, 48.0%, 44.9%로 절반 이상 미 가입 상태이다.(2019년 8월 기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직,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소득중단, 고용정책 접근에 있어서의 제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과 직 면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수고용노동, 단시간노동, 플랫폼노동 등 더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 건강보험 체납자 수의 경우 2012년~2015년 기준으로 405만명(216만세대)에 달한다. 장기체납자의 월 평균 체납액은 4만 7천원으로 5만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이 대다수이며, 월 3만원 이하의 보험료 체납도 50%를 차지한다. 체납자의 대부분은 '짚은 자격 변동과 짧은 자격 유지기간'을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회보험의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2. 퇴거가 아니라 상생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 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 이후 살인진압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이 매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매번 폐기되었다. 그동안 2017년 12월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이 사망하는 등 개발을 향한 탐욕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야만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와 부동산부자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삶을 빼앗는 개발이 법의 이름으로, 공익의 목적이라는 기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 2018.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빈곤통계연보

2) 1인 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50%이하

3) 1인 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40%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을 측정할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중위소득40%이하를 절대빈곤율로 표기함.

집회금지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도 서울시 천호동과 대구시 동인동 개발지역에서 강제퇴거는 계속 강행되었고, 개발 진행 전인 양동쪽방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예비퇴거조치가 강행되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사회권 관련 심사에서 모두 ‘한국의 강제퇴거 실태에 대한 우려와 이를 위한 예방 조치를 권고’ 한 바 있을 정도로 한국의 강제퇴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거주민들의 재정착 권리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동의 요건 강화” 그리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규제 및 공공의 의무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 대안적인 법안이다.
- 「강제퇴거금지법」은 주거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일부지자체에서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절기 강제철거만 피하면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지역 주민들은 동절기든 하절기든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무조건적인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강제퇴거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
-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에 충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다. 임시주거단지를 마련한 후 개발지역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개발하는 방식의 “순환식 개발”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순환식 개발은 건설될 공공주택 등 재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를 일정장소에 먼저 설치하여 그곳에 집단이주 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인근 개발지역의 전월세 폭등으로,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함과 개발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전월세대란을 차단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② 「행정대집행법」 개정

- “행정대집행”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해 행정 관청 또는 제3자가 집행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철거민, 노점상, 임차상인, 노동자,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이 행정대집행의 집행대상이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 지자체들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도시미화, 현대화, 거리가게 규격화, 노점상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이름의 폭력을 창조하고 역대 행정대집행 예산을 책정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두기, 집회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상황에서도 노량진역 노량진수산물시장상인들의 천막과 광화문 문중원열사의 분향소에 행정대집행이 강행되었다. 대집행을 대행하는 용역업체는 교육, 복장, 신고 등 기본적 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폭력적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대집행과정에서 욕설, 성희롱,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다. 「행정대집행법」이 가난한 사람들,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집행 대상의 내용이 주거나 생계와 관련된 건물이나 시설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주거나 생계시설의 경우 동절기 집행을 금지해야 하며, 기본적인 인권과 밀접한 주거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충분한 협의 및 다른 구제 수단이 마련 될 때까지 그 계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3자인 민간 위탁 용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공무원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에 참여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집행 책임자 및 대집행 실행자가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위협하는 등에 대한 금지조항과 인권침해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 인종존중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3. 세임자 중심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1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한국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 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형식적으로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와 월차임전환율 상한제도가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전환율 상한제도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세입자 주거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으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무주택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차보증금 보호강화”, “기준 임대료 도입”,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도”를 포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거정책이며,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에 불과하며 OECD 평균 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이나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28만 명에 달한다.
- 문재인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등을 공약했다. 2019년과 2020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분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행복주택과 전세임대는 각 전체 48.0%, 52.7%에 달하는 반면 영구임대는 모두 2.8%에 불과하다.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준이 더 높은 유형이 많이 공급되고 있어, 전체 공급량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에 있어서 ‘최저소득계층 우선’<sup>4)</sup>이라는 공급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보증금 대출방식의 전세임대는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이나, 입주자의 점유 안정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체계 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전월세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공급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총 주택 재고를 확충해야 한다.

## 4.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예산확보

### ① 장애인수용시설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 장애인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었던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 사생활 등의 권리를 찾는 일이다. 폭행 및 학대, 금품갈취, 강제노동 등으로 세상에 알려진 대구시립희망원은 7년간 3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비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석암재단, 성람재단, 인화원, 자립복지재단, 인강재단, 인천해바라기, 마리스타의 집, 루디아의 집 등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장애인거주시설범죄는 끊임없이 벌어져왔으며, 비리·횡령·인권침해 등 범죄유형 또한 변함없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범죄시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거주인에 대한 대책수립마저 전원조치 등의 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시설정책을 약속하고,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

4) 최은영 외, 2020.2.20.,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토론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니터케어)선도사업'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모델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1,517개소의 장애인수용시설에 30,693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중 30인 이상 대형시설이 319개에 달하며, 전체 시설거주인 중 절반 이상인 19,410명이 대형시설에 갇혀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했지만 기존의 대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시설로 상징되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 차별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설중심의 장애인정책은 민간재단, 시설장의 이윤을 위해 장애인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라는 공간에 가두며 개인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악행이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중단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2030년 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②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위한 예산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2019년 7월, 31년 만의 장애인정책의 변화로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여 19년 7월 일상생활지원, 20년 이동지원, 22년 소득·고용지원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현재 일상생활지원 영역(활동지원 등 5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인정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전히 의학적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종합조사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종증장애인에게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종합조사를 기준으로 ‘거주시설 입소’ 기준을 두며 여전히 ‘시설입소’ 중심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개선, 판정도구 개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과 이념, 시스템의 변화이며 인권의 문제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으로 구시대적인 장애 개념을 넘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 개념의 재정립 및 범주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하는 등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만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제의 완전폐지”를 위해 현재 OECD의 1/4수준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OECD의 평균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 5. 권리중심의 홈리스정책

### ① 「노숙인복지법」 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2011년 6월 제정된 이후 9년이 지났으나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과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다. 홈리스는 거리·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짬질방·만화방·PC방·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노숙인복지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거리와 시설 거주자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노숙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와 복지지원 제공은 오직 거리와 노숙인시설 생활인, 쪽방밀집지역 거주민으로 축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홈리스복지는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홈리스에 대한 정책이 “주거우선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아닌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의 복지지원사업 중 ‘노숙인재활·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그 외 거리노숙인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쪽방상담소 운영 등 모든 복지사업은 지방이양 되어있다. 이처럼 동일한 정책 대상에 대한 분리된 집행이 중앙정부의 책임성약화와 지방정부의 하중강화와 지원수준의 편차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모든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홈리스에 대한 복지의 질 하락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홈리스의 경우 여성홈리스를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으며,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배제되고 있다.
- “노숙인 등”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정책대상을 명료화하고 복지지원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임의규정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홈리스 정책을 도입하는 등 홈리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현실화시켜 홈리스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삶과 홈리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차별금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홈리스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공공주도형 개발 시행

- 쪽방이 홈리스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개입이 시작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일부 주거·안전설비의 수선지원을 하는 한편, 쪽방지역에 대한 해소책을 구축해 왔다. 거리노숙으로 전락하기 전 방파제 혹은 마지노선인 쪽방은 철거의 대상이었으며 개발로 인한 쪽방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였다. 그간의 쪽방개발은 쪽방주민에 대한 철저한 축출의 역사였다. 서울시에 있는 쪽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820 여실이 철거되었다. 개발로 인해 쪽방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인근 쪽방으로 이주하거나 거리 노숙을 해야 했다.

- 2020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1,200호를 지으면서 영구임대주택 370호를 마련하여 기존의 쪽방 주민들을 전원 입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개발기간동안 쪽방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先이주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분의 쪽방촌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양동 쪽방촌의 경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결정·고시되어 지구 별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건물 폐쇄와 주민 퇴거 등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쪽방촌이 포함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
- 나아가 쪽방 주민들을 포용하는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를 파악 및 적극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의 6-70%는 기초생활수급,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 노숙 등의 경험이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비율도 약 30%에 달한다. 쪽방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 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거를 마련해야 한다.

## 6. 민간에 떠넘긴 의료, 사회서비스 중단하고 공공중심으로 보장

### ①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강화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그 체계를 확립하기 이전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민간 중심의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가져왔고, 공공성을 훼손하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주로 여성들이 진입하는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해왔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비리·횡령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자체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존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이후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나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가로막으며, 부족한 돌봄, 간병, 활동지원 등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개인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빚을 지게 만들고, 빈곤과 돌봄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가족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하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 또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장화 된 의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 제주영리병원 신설 등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진행되어 온 의료의 시장화는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접근가능한 병원이 없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를 선택해야 했다. 부족한 공공병원은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공공병원 등 지정병원만 이용 가능한 가난한 사람들은 퇴거, 전원조치 통보를 받아야 했다.

- 최소한의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위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빚을 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이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기존 시설중심 정책에서 주거중심지원 정책으로의 변화에 맞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커뮤니티케어의 시장화를 경계하며 공공의 주도아래 진행되어야 한다.